

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40	40	0
	부단체장	28	28	0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02	202	-1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40	40	0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42	42	0
	의원국외여비	18	23	5
지방보조금		14,789	7,166	-7,623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117	117	0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	770	
공무원 일·숙직비			249	

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.go.kr>)

☞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출

- 의정운영공통경비 : 의원 1인당 4,800천원*7명 + 예산결산특별위원 1인당 1,000천원*6명
- 의회운영업무추진비 : 의장 2,100천원 *1명*12월 + 부의장 1,050천원 *1명*12월 +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,000천원
- 의원국외여비 : 의원 1인당 2,500천원*7명 + 예외편성분(자매결연 행사)

☞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 산출
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 : 군수 39,600천원, 부군수 27,500천원

- 시책추진업무추진비 : 202,000천원

☞ 지방보조금 기준액 :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

☞ 통이반장 활동보조금

- 리장 수당(34명) :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상여금 연 200%,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(월2회)
- 반장 수당(110명) : 50천원 * 110명

※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,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.